

미국판례

비록 사인이더라도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안에 관하여
두드러진 지위를 나타내어 제한된 범위내에서 '공공의 인물'이 되었다면,
동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악의가 없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CLARDY V. THE COWLES PUBLISHING CO.
24 Med. L. Rptr. 2153(워싱턴 항소법원)

사건개요

1. 이 사건 원고인 Clardy 는 완공시 약 45 만불의 저당가치가 있는 Mission Springs 라는 Spokane 카운티 개발계획을 주도하는 인물이다. 원고는 미연방 주택 및 도시개발국(HUD)에 위 개발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한 저당보증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엄청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자 원고는 반대파 지도자들과 회합을 갖고 지지를 호소함과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을 만나 도시개발국이 예정한 지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2. 그 무렵 피고 The Conies Publishing Co.가 발행 하는 신문인 "The Spokesman Review"에 리포터인 피고 Bill Merlin 이 원고와 관련된 두 건의 기사를 기고하였다. 1993 년 7 월 29 일자기사는 『조세범이 도시개발국의 보증을 얻으려 한다. 대규모 개발계획은 반대에 부딪혀』 라는 제목하에 원고가 1980 년에 연방소득세 포탈혐의로 기소되었고, 1972 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집주인들을 대신하여 임대주택에 세들어 사는 400 가구를 밖으로 내들은 일이 있다. 그리고 원고는 현재 추진중인 Mission Springs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국에 보증신청을 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이 재발에 반대하여 벽에 부딪치자 생태국(Department of Ecology)의 개발을 반대하는 직원 1 인을 해고하고 다른 직원 2 인을 징계하라고 요구하였다고 쓰고 있다. 같은 해 12 월 14 일자 기사는 다시 『개발사업주의 주소는 허위-저당보증신청시 도시개발국에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 라는 제목하에 도시개발국에 제출된 Mission Springs 개발계획 관련 서류에는 허위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개발주제인 회사관련 서류에도 같은 내용의 허위 주소들이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원고는 1994 년 1 월 위 기사의 리포터와 신문발행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 심 법원에서는 피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판결요지

1.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첫째로 문제의 발언이나 기사가 허위이고, 둘째로 법이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의사소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셋째로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넷째로 손해가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문제의 발언이 공공의 인물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세 번째 요건사실인 귀책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 문제의 발언이나 기사가 허위인 것을 알았거나 현저히 주의를 결여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한 것, 즉 현실적 악의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3. 원고가 그 직함이나 지위면에서는 사인이지만, ① 언론매체에 손쉽게 접근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② 공공의 관심사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자청하여 담당하고, ③ 그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였으며, ④ 언론보도는 이미 발생한 상황을 알린 것일 뿐이고 ⑤ 그 보도 당시도 원고의 그러한 역할이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원고는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공공의 인물에 해당된다.

판단이유(요약)

1. 공공의 인물과 명예훼손

미연방헌법 수정 1 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공공의 관심사에 관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적 발언이 공무원이나 기타 공공의 인물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발언 내용의 허위여부에 관한 현실적 악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공의 인물은 제한된 범위내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 Gertz 사건에서는 첫째로 문제의 발언이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둘째로 원고가 문제의 공적 논쟁에 참여한 정도와 참여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지고 공공의 인물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였다.

Gertz 사건의 판결 이후 여러 연방 항소심 법원에서 이 문제의 판단에 관한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연방 제 3 항소법원이 Foretich 사건에서 제시한 5 가지 기준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여져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는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공공의 인물에 해당된다.

즉, ① 원고가 보증신청서에 허위주소를 기재하였다는 신문기사가 나간 이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곧 정정보도가 실릴 정도로 원고는 언론매체에 손쉽게 접근하고 있었고 ② 원고는 개발예정지 거주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개발계획의 내용을 알리고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알려주기로 약속함으로써 공공의 관심사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아울러 그 일의 향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였으며 ③ 또한 원고의 전력이나 허위주소 등에 관한 신문기사는 Mission Springs 개발계획이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추진되는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의 논쟁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사라고 할 수 있다. ④ 그리고 Mission Springs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이 사건 신문보도로 인하여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으며, ⑤ 원고의 공공의 인물로서의 지위는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에도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원고는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공공의 인물(limited-purpose public figure)에 해당된다.

2.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입증원고가 제한된 범위내에서 공공의 인물에 해당한다면, 원고에 대한 신문기사가 명예훼손이 되려면 그 기사내용이 허위이고, 상대방이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 이른바 현실적 악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먼저 문제의 기사가 허위인지를 보아야 하는데 이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파악하여 핵심적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7월 29일자 신문기사는 비록 모호하고 부정확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기사의 핵심은 사실과 부합한다.

다만 개발사업주의 주소가 허위라는 취지의 12월 14일자 기사는 사실과 다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기사를 작성하기 전 리포터인 피고 Merlin은 우체국에 조회하여 문제의 주소에 관한 기록이 없음을 확인한 이후에 퇴직 경찰관에게 의뢰하여 그 주소의 존재 여부를 재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직접 그 주소를 찾아 나섰으나 확인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피고 Merlin로서는 그 주소가 허위라고 믿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개발계획의 자금확보에 차질을 빚는 등의 현실적 손해를 입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하여 항소를 기각한다.